

과천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공사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대표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대표자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

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5조(사고 예방책임) 공사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의 최고 경영자와 전 직원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 표지) 각 사업부서장은 유해·위험한 작업장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조직의 구분) ① 공사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조직과 스태프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② “라인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둔다.

③ “스태프조직”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필요시 산업보건의를 둔다.

④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 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계자 임명 등) ① 라인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공사의 조직 계통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② 스태프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하며, 선임 후 고용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
11.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집행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13. 안전작업 표준 지침 작성 및 보완
1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각 부서의 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자기 소속 작업장 및 직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7. 불안전한 작업 방법 개선
8.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지도
9.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0.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11.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지도
12.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3.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상 문제 발생 시는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7. 안전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8.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계획수립
9. 안전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10. 안전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11.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12.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13.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1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관리자)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2.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위생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14.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
15.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16.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
17.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확인
18. 기타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작업지휘자) ① 다음 작업이 실시될 경우 종사근로자 중 작업경험이 많은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게차, 셔블로우더,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
 2. 100kg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3. 크레인, 데릭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제조, 취급작업
 5. 화학설비의 개조, 수립작업
 6. 산소결핍 위험작업장
 7. 고기압하의 작업
- ②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종사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

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사는 안전보건관리 운영에 노사가 참여하고 안전 보건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하거나 사장으로 한다.

2. 위 원

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당해사업장 근로자

나. 사업장대표가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부서의장

다. 안전관리자 - 사업자측에 포함

라. 보건관리자 - 사업자측에 포함

3. 간사 : 안전업무 담당

제15조(개최시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3개월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수행할 직무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시설·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 규정, 각 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하는 안건

제17조(회의결과 주지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2.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3. 기타 방법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을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장업내 안전·보건교육은 공사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9조(교육담당자)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0조(교육계획수립) 공사의 교육담당 부서장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1월 중에 당해년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사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전 직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내 안전교육 또는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 시 소속 부서장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자 교육) ① 공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작업내용 변경 시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 채용 자 및 작업내용 변경 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 간호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특별안전·보건교육) 영 별표2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배치 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제24조(정기교육) ① 공사내 모든 소속 직원에게 매월 실시하며 사무직과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과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관한 사항
2.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3.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 간호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8.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관리감독자교육) 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관한 사항
2.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4.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5.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 간호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정기교육은 교재 및 강사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또는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정기교육의 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교육기관, 외부전문 강사로 한다.

제27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책자 및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여 실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8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실시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관계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30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 진단) ①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공사내의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중지) ① 작업 중지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 중지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③ 모든 작업자는 제1항의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방호조치)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제34조(관리책임자 지정) 부서장은 위험기계·기구를 사용 시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 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35조(준수사항) ① 작업자는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신고할 것.
- ②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신고가 있을시,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 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 시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 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

제37조(검사결과 조치)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한 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운전으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용중지 표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제38조(검사계획 등) 안전검사 계획은 매년 초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수립 시행하고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년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39조(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 소관 작업 분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제40조(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안전업무 담당

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 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신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제41조(점검방법)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 위험물,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42조(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 사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하고 즉시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 점검결과보고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처리하고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③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안전기준) ① 공사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필요시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중에서 당해 사업장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안전작업 지침은 소관 사업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안전관리 규정 제43조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다.

③ 작업자는 표준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45조(안전수칙) ① 공사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 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제정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46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보건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배치전 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

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47조(건강진단 실시 방법) ① 대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현장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② 사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사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진단결과 조치) ① 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 받아 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질병자 근로 금지 등) ① 대표자는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부터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유해 물질에 중독된 자는 당해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선 안 된다.

제50조(작업환경측정)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규칙 제1항에 규정된 작업장으로 한다.

②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51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당해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52조(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산업보건기준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53조(유해물 표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산업보건기준에 의거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54조(보건수칙) 유해물질 취급 부서장은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55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공사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 호흡용 보호구
9.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작업 중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

④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56조(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7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비상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5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대표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사고 조사는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 실시

⑥ 안전관리자(직업병 관계는 보건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60조(재해분석) 안전관리자는 재해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무재해운동

제61조(무재해운동) 공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 시행 요령

에 의거 실시한다.

제62조(추진기구) 공사의 무재해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무재해운동을 총괄 관리토록 하고 각 사업장별 안전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제63조(추진방법) ①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은 5C운동이나 위험예지 훈련을 적용하여 활용하되,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시행한다.

② 안전업무담당자는 공사 전 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무재해 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게시(부착)한다.

제64조(무재해운동 포상) 무재해 목표달성 유공자에 대한 팀 및 개인포상은 사장의 결재를 득 한 후 실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업재해예방 책무 (제5조 관련)

구분	책무
공사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각 부서의 장)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안전·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일반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전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